

2025. 9. 24.(수) 10:30

금산다락원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회의자료



충청남도시장 · 군수협의회

목 차

■ I.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 1. 건의사항 처리결과 5

■ Ⅱ. 시·군 건의사항 29

- 1. 충남 시니어클럽 도비 지원 운영비 증액 건의 : 보령시 29
- 2.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제한 완화 : 공주시 30
- 3. 하천 설계기준 상향 및 하상변동 특별조사 건의 : 아산시 32
-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조정 검토 : 서산시 34
- 5. 공무원 기준인건비 증액(정원 증원) 건의 : 계룡시 35
- 6.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요건 완화 건의 : 금산군 36
- 7.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희 국유재산 활용 : 금산군 37
- 8. 정보공개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건의 : 부여군 ... 38
- 9. 귀농후계농 정책자금 선정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 건의 : 부여군 .. 42
- 10. 외국인자녀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 : 청양군 43
- 11. 산지전용허가 권한 지방이양 : 홍성군 44
- 12.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제도개선 건의 : 예산군 46
- 16. 격렬비열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외 : 태안군 48

목 차

	Ⅲ. 협의회 보고사항	51
●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워크숍 추진계획	51
● 1.	민선8기 1-3차년도 우수 건의사항 담당자 국외연수 추진계획	52
● 2.	호우피해지역 재해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55
	Ⅳ. 홍보·협조사항	59
● 1.	낭만과 정취가 가득한 보령시 3대 가을 축제 : 보령시	59
● 2.	제71회 백제문화제 홍보 : 공주시	60
● 3.	2025년 제24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개최 : 아산시	62
● 4.	2025년 현충사 달빛야행 개최 : 아산시	64
● 5.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 개최 : 서산시	65
● 6.	제64회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제23회 칠갑문화제 : 청양군	67
● 7.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 페스티벌 개최 : 홍성군	69
● 8.	예산군 대표축제 및 신규 관광지 홍보 : 예산군	70
● 9.	2025 꽃과바다 태안국화축제 개최 : 태안군	72
● 10.	차기회의 개최 안내 : 협의회	73
	Ⅴ. 참고자료	77
● 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주요내용	77
● 2.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충남공무원노조 간담회 주요내용	81
● 3.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87

I.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5
--------------------	---

건의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현 황
계			50건 / 처리 15건(일부수용: 1건, 장기검토 5건, 수용곤란: 9건), 검토중: 35건	
충청남도			1건 / 처리 1건(일부수용: 1건) 검토중: 0건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25.08.	아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도비 지원	일부수용 (결과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9건 / 처리 14건(장기검토: 5건, 수용곤란: 9건), 검토중: 35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23.04.	아산	법정부 차원의 공무직 복무 관련 상위법령 마련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3.06.	홍성	면(面) 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 완화	검토중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23.08.	보령	마리나항만법 규제 완화로 해양 新산업 육성	검토중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23.11.	논산	충남권역 국립보훈 요양시설 건립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검토중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	23.11.	예산	국립 공주대학교 의대 신설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24.03.	태안	국도38호[이원~대산]해상교량 건설 지원	검토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4.05.	공주	7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지원	검토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24.05.	논산	청년창업농의 농지은행 임대차계약과 시설설치 승인 절차 일원화	검토중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4.05.	부여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24.05.	홍성	신창역~홍성역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영 건의	검토중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방 식
국토교통부	24.05.	태안	「태안~서산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건설 계획 반영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4.07.	예산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세분화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24.07.	논산	배수개선사업 대상 기준 완화 건의	검토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25.03.	보령	신규 국고여객선 건조에 따른 외연도항 내 전용 접안시설 구축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5.03.	당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 기준인력 등 분리	검토중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5.03.	서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방안 건의	검토중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5.05.	보령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개정	장기검토 (결과②)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25.05.	공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의 예산편성 지침 개선	수용근관 (결과③)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5.05.	아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	수용근관 (결과④)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5.05.	서산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지역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 신설 건의	수용근관 (결과⑤)
경찰청 (교통안전과)	25.05.	논산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카메라] 과태료 지자체 수입 전환	수용근관 (결과⑥)
국토교통부 (건강정책과)	25.05.	논산	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수용근관 (결과⑦)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25.05.	계룡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변경	수용근관 (결과⑧)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25.05.	금산	중부 동서고속도로(충남서천~경북김천 간) 신설	장기검토 (결과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5.05.	부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장기검토 (결과⑩)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방 식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25.05.	서천	금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포함 건의	수용고란 (결과⑪)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5.05.	청양	외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조사 도입	장기검토 (결과⑫)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5.05.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수용고란 (결과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25.05.	예산	지자체 주요관광지 입장객통계 변경 유예 건의	장기검토 (결과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5.05.	태안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대상의 완화	수용고란 (결과⑮)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25.08.	보령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5.08.	보령	정부차원의 반값농자재 지원 정책도입	검토중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개인정보위원회	25.08.	공주	드론 비행승안개인정보 촬영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검토중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5.08.	아산	주유소 지역화폐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 제한 제외	검토중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25.08.	서산	불법현수막 철거 규정 개정 및 개선방안 건의	검토중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25.08.	논산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25.08.	계룡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청	검토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5.08.	당진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접근제약 완화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과)	25.08.	금산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	검토중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5.08.	금산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로 기업 애로해소	검토중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방 안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25.08.	부여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을 도입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금융지원과)	25.08.	부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검토중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25.08.	서천	김 가공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	검토중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25.08.	서천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관련 환경규제 완화 건의	검토중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5.08.	청양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검토중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25.08.	홍성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	검토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25.08.	예산	시·도 및 시·군·구 선거법 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5.08.	예산	기준인건비 초과지출가능항목 확대 운영 건의	검토중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25.08.	태안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체사업(해상풍력) 지원	검토중

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도비 지원		
검토기관	道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이민화 (전화 : 041-635-4053)	검토결과	일부수용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 개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할인율 보전분에서 국비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5%) 중 50% 도비 지원 건의

□ 사업 개요

- (위 치) 15개 시군
- (사업기간) '25. 5. ~ 12.
- (사업내용)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소요비용 일부 보조
- (총사업비) 165,738백만원(국비 89,872, 도비 13,324, 시군비 62,543)

□ 검토 결과

- '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하에 사업규모 대폭 확대·추진 중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 국비지원액) ^{24년}8,695억/309억 → ^{25년}1조3,324억/899억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국비지원은 지자체 유형을 분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할인율 및 국비지원율 차등 지원
※ (지자체 유형별 국비지원율/할인율) 비수도권지역 8% / 13%, 인구감소지역 10% / 15%
- 도에서는 시군 지방비 부담 완화 및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 지자체 유형 구분없이 균등하게 도비지원 예정으로 지원율은 지방비 부담분(5%) 중 20% 수준으로 검토 중

□ 향후 계획

- 시군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비부담율 하향 조정 건의(도→행안부)

②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해수부) 일부개정		
검토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박자현 (전화 : 044-200-5431)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보령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현행 규정상으로는 계속하여 60일 이상 조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어업경영자금을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어업의 특성(품종별 금어기 설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업목적 달성(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용자금 회수 요건 변경
 - * (당초) 용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용자금 회수
 - (변경) 용자기간 중 연간 조업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용자금 회수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현행 규정은 어업경영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조업 공백 기간 삭제는 부정수급 발생 여지가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1년간 저리로 용자
- 또한 사업목적(안정적 경영기반)을 고려하여 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용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음
 - * 비어기·천재지변으로 인한 조업 공백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기간에 미산입
- 향후에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질병 등의 조업 공백기간 예외 사항 추가 규정 및 회수 예외 승인 주체를 대출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③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용의 예산편성지침 개선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송옥현 (전화 : 044-215-7336)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예산안 편성지침」 상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감리비) 예산 산정 기준을 공사비 효율 적용 방식 → 집행기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개선 필요
 - 실제 대가 대비 예산 부족으로 현장관리 부실,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 (사 례) 공주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총사업비 85억원)
 - 예산편성 시 건설사업관리용역비(책임감리비 효율 적용) : 7억원
 -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금액(건설기술용역대가 기준 적용) : 16억원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정 내용, 공사 난이도, 공사기간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표준화된 효율 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음
 - * 실비정액가산방식 : 공사단계별 업무, 공사 난이도, 공사기간 등을 기준으로 투입인원 산출 후 용역대가를 산정(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내용이 구체화 된 후 필요시 집행단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정부는 적정 감리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 정비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 ('23년 편성지침) 평균 효율 1.5% 인상, ('25년 편성지침) 100억미만 공사비 구간 효율 신설

④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신승현 (전화 : 044-201-1739)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포함되어 농지에 설치 불가
⇒ 생산관리지역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령 개정 건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농지는 국민식량 공급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며, 대지 등으로 전용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비가역성이 있어 보전 필요
 - 이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농사)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농지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절차를 통해 허용 중
- 농지 전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네가티브 규제)하고 있으나,
 - 다만, 휴게음식점을 포함하여 농업의 진흥·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시설물은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토지 이용행위는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며,

-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의 지정 목적*과 생산관리지역 내 비농지면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우선 설치할 필요
 -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주변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이라면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 범위의 확대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지역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 신설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주무관 권성일 (전화 : 044-205-3785)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지역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문건설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충남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현저히 떨어짐**

* 2022년 2,480개 → 2023년 2,566개 → 2024년 3,000개

** 전국 평균 지역하도급률 34.89%, 전문건설업 하도급률 (서울) 60.6%, (충남) 18.5%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으로 지역업체 활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실정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지역업체 대상 기자재 구입 및 하도급 발주 실적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신설 건의

[예시]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급	평점	비고
전년도 사업수행시 기자재 공급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	+1.0 +0.5	가점
전년도 사업수행시 하도급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	+1.0 +0.5	가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필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서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건의하신 가산점 신설 항목의 경우 관련협회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부존재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용 곤란함
- 참고로 현행 예규에서 30억 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하도급업자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점(30% 이상 +1.0점, 20% 이상 +0.5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에 대해 가산점(1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⑥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카메라) 과태료 지자체 수입 전환		
검토기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정성근 (전화 : 02-3150-0633)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교통 과태료 지자체 세입 귀속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부과·징수 근거 마련 필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국가경찰이 징수·납부 받은 과태료·범칙금은 「국고금 관리법」 上 ‘법령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국고금에 해당
 - (귀속) 같은 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수입의 국고 납입 의무를 규정, 국가경찰 단속 과태료 등은 국가 세입에 귀속
 - (활용) 교통 과태료·범칙금의 20%는 응급의료기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편성*되고,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귀속
 - * '10년부터 3년을 기한으로 운용 중이었으나, 법률을 개정하여 '27년을 기한으로 한시적 운용 중('10년 → '13년 → '17년 → '22년 → '27년 말)
 - 국가재정법 제11조는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규정
 - 과태료 수입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부과·징수의 근거 마련도 필요하나,
- ⇒ 교통 과태료·범칙금 이전 필요성에 대해 사전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⑦	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이신영/주무관 윤민영 (전화 : 044-202-2857/2856)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기간에 일부 숙박업소에서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바가지 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광객 불만 증가·지역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자율가격제인 숙박요금은 영업자의 요금표 게시의무는 있으나, 최고요금 또는 가격 상한선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시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함
- ⇒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도·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건의

□ 검토의견 : 수용불가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장의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요금표 게시 및 준수’는 영업자로서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축제기간의 숙박요금 최고가격 제한 등의 조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과는 무관한 사항임
- 타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최고가격 지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⑧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변경		
검토기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사무관 김달호 (전화 : 044-202-7656)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가이드라인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정부는 '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이는, '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는 이전 대책과는 달리 전환대상에 용역근로자를 포함하였으며, 용역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청소·경비 등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민간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취지임.

⑨	중부 동서고속도로 (충남 서천~경북 김천 간 신설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이용재 (전화 : 044-201-3876)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6조 1,250억 원(국비, 지자체 추정)

□ 건의개요

- 충남 서천~경북 김천 간 도로 건설로 지역간 연계 기능 강화를 통한 광역적 상생발전과 광역 물류 교통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유도
- 3개 도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사업 개요(지자체 건의기준) >

- (사업구간) 충남 서천군 ~ 논산시 ~ 금산군 ~ 경북 김천시 일원
- (사업규모) 4차로 신설 122.5km
- (총사업비) 6조 1,250억 원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고속도로 건설사업 절차 >

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 ② 고속도로 건설계획 → ③ 예비타당성 조사 → ④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⑤ 기본 및 실시설계 → ⑥ 도로구역 결정(노선 확정) → ⑦ 착공 → ⑧ 개통

-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 후 예비타당성조사,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나, 건의 구간은 국가계획에 미반영 상태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사업효과,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경우 예타 등 건설 절차에 따라 추진

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 박태성 (전화 : 044-205-2372)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협조부서(부처)	외국인정책과(법무부)

□ 건의개요

- 농촌 현장의 구조적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결 필요
 - 시기를 고려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기간 조정
 -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시적 농업 활용 가능한 제도 마련
 - ※ 예) 자진신고 시 일시 근로 허용제 및 특정 기간 농작업 한정 임시 허가제 도입(농번기 인력 부족 시기)
 -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 확대, 국가 간 송출 협약 체결 등
- 이민정책·외국인 인력 관리 등 총괄 부처(이민청) 신설
 - 이민정책 체계 구축, 분산된 업무의 컨트롤 타워 기구 설립
 - 농업뿐만 아닌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전 분야 인력 부족 현상 및 인구 구조 변화 체계적 대응 필요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이민 관련 사무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근로자, 주민정착, 복지·의료 서비스 등 여러 기능과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 단일부처 총괄이 바람직한지, 現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거버넌스 강화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⑪	금강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 포함 건의		
검토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 신의찬 (전화 : 044-201-7013)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금강수계 인접 시군에서 발생한 금강하구 쓰레기(퇴적토)로 인한 인력과 예산투입, 어업 피해 등 지속 발생
 - 금강수계 용담댐 사용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금강하구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 부과
-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물이용부담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류 규제지역 지정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모든 물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

⑫	외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조사 도입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서기관 최종천 (전화 : 044-202-3514)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 장기요양기관 구인난 심화
-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진입 저조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유휴인력 활용, 소정의 실습과정 이수
만으로 요양보조사 자격을 부여해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으로 활용

< 자격 취득 요건(안) >

요양보호사(현행)	요양보조사(신설)
① 320시간 교육 이수 (이론 126h, 실기 114h, 현장실습 80h)	① 400시간 교육 이수 (이론 126h, 실기 114h, 현장실습 160h)
② 자격시험 60점 이상	② 자격시험 면제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24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인구 1천만명 돌파 등으로 돌봄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추진 중

- 요양보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유휴인력 견인,
젊고 유능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배출하는 제도** 도입 예정

*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근로환경개선) 녹음장비 보급,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등

**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및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법무부 협업)

- “요양보조사”라는 새로운 돌봄 인력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처우개선 상황, 장기요양 재정·수가,
직무분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이진우 (전화 : 044-202-3397)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비로만 운영하고 있어 국비 지원 필요
 -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모자보건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규정

* 제15조의17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자체 내 출생아 수, 인구구조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취지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산후조리원 포함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 정책(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의 인구분포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방비를 통해 수행 중
- 개별 지자체 산후조리 정책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은 공공산후조리원 미운영 지자체에 대한 역차별 요소 포함
- 중앙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정책으로 산후조리 정책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정책 수행 필요

⑭	지자체 주요관광지 입장객통계 변경 유예 건의		
검토기관	문체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선기 (전화 : 044-203-2812)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충남 예산군은 '25.6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국가승인번호 제113005호)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시·군별 입장객 변경계획의 철회 또는 유예”를 건의함
- (변경내용) 개방형 공간 내 무료 무인계측기 집계방식을 통계대상에서 제외
- (변경사유) ①중복집계에 따른 과다측정 방지*, ②지자체의 오용사례 지속**
 - * 개방형 공간의 무인계측기는 과다측정 사례 다수 발생(중복집계 및 단순통과 입장객(지역주민, 통근자 등))
 - ** 본 통계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산출되나, 지역 전체 입장객이 아닌, 등록된 '관광지점'에 대한 입장객 통계임, 일부 시·도에서 관내 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합산하여 지역 관광객 총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 오용 활용에 해당하며 해당 통계의 정확도·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과다집계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킴
- (충남 예산군 의견) 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지침변경(개정) 추진, ② 관광객 목표 변경 등으로 정책 혼란 우려, ③ 설치한 계측기 미사용으로 예산낭비 및 정부지원 감소 우려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절차적 정당성)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는 '24.6월부터 전수조사, 현장조사, 관련 법률 연계 유형분류, 전문가 자문,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협의회(3회), 통계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하고 '25.6월 통계청 변경승인을 완료함
- (통계활용 오용방지) 해당 통계는 개별 관광지점 단위 자료로, 단순 합산 방지를 위해 '1개소당 평균 입장객 수' 활용을 안내하며, 기초단위 방문객 목표치로 설정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음
- (중장기계획) 변경승인 대상 중 객관적 집계 가능 지점은 재등록 절차 진행 중이며, 개방형 공간 계측기의 오용·과다집계방식을 지속 점검할 계획임

⑮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대상의 완화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권인혁 (전화 : 044-201-4082)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태안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건축 중 건축물의 위치를 1미터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신고) 의무
 -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1호 나목
- 도시지역 외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 중 건축신고 대상의 위치 변경 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건의
 - 건축주 설계 비용 부담 경감 및 건축공사 지연 방지 등 편의 도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건축물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리 등 건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나, 1미터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사용승인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건축주가 허가권자의 확인 없이 1미터를 벗어나 임의의 위치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은 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신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

Ⅱ. 시·군 건의사항

1. 충남 시니어클럽 도비 지원 운영비 증액 건의(보령)	29
2.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제한 완화(공주)	30
3. 하천 설계기준 상향 및 하상변동 특별조사 건의(아산)	32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조정 검토(서산)	34
5. 공무원 기준인건비 증액(정원 증원) 건의(계룡)	35
6.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요건 완화 건의(금산)	36
7.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휴 국유재산 활용(금산)	37
8. 정보공개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건의(부여)	38
9. 귀농후계농 정책자금 선정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 건의(부여) ...	42
10. 외국인자녀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청양)	43
11. 산지전용허가 권한 지방이양(홍성)	44
12.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제도개선 건의(예산)	46
13. 격렬비열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외(태안)	48

①	충남 시니어클럽 도비 지원 운영비 증액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추진기간	2026.1.~12.	소요예산	시군당 4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 ◆ 충남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 시니어클럽의 평균 운영비 및 운영인력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

□ 충남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구 분	2025년	2024년	관련 법률/지침
운영비 (천원)	340,000 (15개 시군 동일)	310,000 (15개 시군 평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침」 : 운영비 400,000천원 이상 권고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 지원기관 상근 인력 8명 이상 배치
상근인력 (명)	평균 5.5명	평균 5.3명	
※ 2025년 전국 시니어클럽 평균 운영비: 422,486천원			

□ 실태 및 문제점

- 공공요금, 임차료, 사무관리비·차량유지비·시설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증액은 미미한 실정
- 관련법 시행규칙 인력기준(8명)은 현 예산으로는 충원이 불가능하여 우수인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관 유지관리에 어려움
 - 제한된 인력(5~6명)으로 급증한 참여자 활동상황 점검, 안전교육 등을 수행 중이나 행정 업무량 과중 및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 발생

* 일자리 배정량: 2024년 18,966명 → 2025년 20,604명 / 8.6% 증가

□ 건의사항

- 일자리 수 확대,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시니어클럽의
→ 26년 운영비를 400,000천원으로 조정 (도비 102,000천원→120,000천원)

작성기관

소 속 :보령시(경로장애과)

성명: 이미화 ☎041)930-3616

②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제한 완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슬레이트 처리 시 주택 철거·처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비주택 철거·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분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제고

□ 현 황

-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지원 분야를 ① 주택 철거·처리, ② 비주택 철거·처리, ③ 주택 지붕개량으로 구분
- 지침에 따른 분야별 불용 발생액 집행 가능 분야

불용 발생 분야	집행 가능 분야
① 주택 철거·처리	없 음
② 비주택 철거·처리	주택 철거·처리
③ 주택 지붕개량	주택 철거·처리 / 비주택 철거·처리

□ 문제점

- 최초 사업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예산이 집중되어 사업이 진행 되었으므로 주택 철거 수요가 감소하면서 불용액 증가
- 반면 비주택 철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배정액 부족으로 사업 대기자 누적*

* 2024년 기준 공주시 비주택 슬레이트 사업 대기량 : 120동

-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2.12.)」에 따라 주택 철거 예산 불용액을 비주택이나 지붕개량 분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비주택 분야 사업 지연으로 노후·유해 슬레이트 시설이 방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초래

※ 참고 : 공주시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배 정 액	454,080	880,000	739,200
집 행 액	414,108	783,954	544,468
불 용 액	39,972	96,046	194,732
불용비율	9%	11%	26%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주택 철거 수요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불용액을 비주택 철거·처리 분야 및 주택 지붕개량 분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 (8P) 취약계층 사전 수요 파악 어려움, 신청 저조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주택 지붕개량 분야' 불용 예상액은 '주택 철거.처리 분야' 또는 ' 비주택 철거.처리 분야'로, '비주택 철 거.처리 분야' 불용 예산액은 '주택 철 거.처리분야'로 집행 가능	- (8p) 취약계층 사전 수요 파악 어려움, ----- ----- ----- ----- ----- ----- <u>'주택 철거 처리분야'</u> <u>불용 예상액은 '비주택 철거 처리 분야'</u> <u>또는 '주택 지붕개량 분야'로 집행 가능</u>

작성기관

소 속 : 공주시(자원순환과)

성명: 김현경 ☎041)840-8624

③	하천 준설 의무화 및 하상변동 특별조사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환경부 (하천계획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기후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치수 역할 강화 필요
- ◆ 조수영향 국가하천에 대한 더 적극적인 준설로 홍수 피해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로 인한 2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호우 빈번하게 발생
 - 아산시 : 382.4mm(일강우, 2025년), 252mm(일강우, 2020년)
- 곡교천·삼교천·무한천 등 국가하천은 조수간만 영향으로 배수효율 저하
 - 퇴적토로 인한 유지 준설(소규모 준설) 한계, 범람위험 증가

□ 건의사항

- (국가하천 의무준설 시행) 극한호우 발생 등 특수한 경우 다음해 준설예산 반영·시행(하천관리청)
 - 담수용량 확대로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안전 확보 가능
- (하상변동 특별조사 의무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하상특별조사 즉각 실시
 - 조사결과 토대로 하류부 하상변동사항 파악 → 재해예방 및 담수능력 확보
 -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적극적인 하천 관리 실현

<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u>다만,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하상변동 특별조사 대상으로 한다.</u>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생태하천과)

성명: 오세원 ☎041)540-2801

붙임 1 강우현황[2025. 7. 16. ~ 17.]

○ 당일 현장 사진



○ 천안관측소 강우기록현황

구 분	관측소	빈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mm)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곡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2019)	천 안	10년	62.3	90	107.6	152.1	192	223.6
		30년	75	109.9	131.9	187.2	236.3	272.6
		50년	80.8	118.9	143	203.3	256.5	294.9
		80년	86.1	127.2	153.2	218	275	315.4
		100년	88.6	131.1	158	224.9	283.7	325.1
		200년	96.4	143.3	172.9	246.5	310.9	355.1
방재성능목표(제2023-230호)			87	122	142			
'25년 집중호우	천 안	강우량	50.6	79.9	104.3	203.3	306.7	382.4
		추정빈도	-	-	△10년	△50년	△200년	△200년

④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조정 검토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현황 및 문제점

- 서산시는 7. 16. ~ 20. 호우피해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근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대 상 :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 금 액 : 1개소 300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 주거 건물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 지원대상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
 법무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약국 등

-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대두
 - 피해 접수 655개소 중 침수 이상 피해 288개소
 - 침수 이상 피해 288개소 중 제외업종 43개소
- ⇒ 재난으로 영업장에 큰 피해를 보았으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라는 사유로 지원 제외됨에 따라 민원 다수 야기

□ 건의사항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조정
 - 202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개정
 - 재난지원금 한정 지원대상 제외업종 삭제 등

작성기관

소 속 : 서산시(일자리경제과)

성명: 김지수 ☎041)660-2180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⑤	공무원 기준인건비 증액(정원 증원)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현황**

-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기준인건비 증액 및 정원 증원 필요

□ **문제점**

- 지역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력구조 상존
 - 지자체의 행정여건 반영 및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증액 필요
- 「정부 정책기조 반영」, 「법률 시행에 따른 의무 구성(TF)」 등, 1명의 직원이 2~3가지 역할을 병행하게 되는 제도상 인력운용 한계 발생
 - ※ '26년도 신설·강화 업무(예시) : 공공안전(재난안전상황실 전담팀, 자연재난 예방 등), 의료돌봄통합, 자살예방 사업 추진 등

※ 유사 시군 간 공무원 정원 비교

(단위 : 명)

연도	충남 계룡시 (60.72km ² , 3면 1동)		충북 증평군 (81.83km ² , 1읍 1면)		경북 울릉군 (73.03km ² , 1읍 2면)		비 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인구수	공무원수	인구수	공무원수	인구수	공무원수	
2003 (출범)	31,058	221	31,310	248	9,245	310	• 계룡시 141명 • 증평군 126명 • 울릉군 30명
2025	46,093 (48%증)	415 (88%증)	37,387 (19%증)	491 (98%증)	9,095 (2%감)	414 (34%증)	• 계룡시 111명 • 증평군 76명 • 울릉군 22명

□ **건의사항**

- 행정수요 확대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정원 증원) 건의
 - ⇒ 공무원·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직결

작성기관

소 속 : 계룡시(자치행정과)

성명: 신현주 ☎042)840-2121

⑥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요건 완화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환경부 (수도기획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 수도시설관리자 요건 완화 건의

□ 현황

구분	임명요건	관련법	비고
수도시설 관리자	1.) 수도시설 설치운영관리 총괄(과장급이상) 2.) 관련학과*·자격증**·실무경력 필요 - 대학졸업 후 2년 실무 - 전문대학졸업 후 4년 실무 - 10년이상 실무 - 자격증 취득자 중 1년 실무 *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학과 **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 기사1급	수도법	

□ 문제점

- 우리군은 상하수도 소관부서장인 맑은물관리과장을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해야하나, 요건충족 대상자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인사운영 상 어려운 실정임 ※ 요건 충족자 : 1명(환경위생과장/환경직)
- 수도시설 관리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관련 자격증과 실무 경력 바탕으로 임명해야한다는 제도적 취지에 공감하나 수도시설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처분받고 있음 ※ 25년 과태료(24년) : 1,200천원

□ 건의사항

-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정수 공급을 받고, 수도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조건부 임명요건 완화
 - 수도시설 설치운영 관리 총괄을 과장급이상에서 팀장*급이상으로 완화
- * 군 단위에서 팀장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팀장의 평균 공무원 경력은 23년으로 해당 직렬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자치행정과)

성명: 김경민 ☎041)750-2762

⑦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휴 국유재산 활용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폐쇄 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자율방범대의 사무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요청

□ 현황

- 최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내 파출소가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이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함

□ 문제점

- 유휴 파출소는 대부분 국가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반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작 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치안·안전·복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음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폐쇄된 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자율방범대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행정 지침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일반 매각 절차에 앞서 자율방범대의 활용 의사를 우선하여 확인하고 검토하는 행정 절차 마련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자치행정과)

성명: 전경기 ☎041)750-2783

⑧	정보공개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정보공개 제도 취지를 벗어난 비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및 벌칙(또는 과태료) 조항 신설·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공개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악의·부당·과도한 청구 등 오·남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여 공공기관 업무부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이에, 비정상 정보공개 청구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 입법예고('24. 7.)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음
- 대법원 판례 또한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악의적 목적으로 정보청구권을 행사·남용하는 것을 제한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14두9349) : 정보 취득·활용 의사가 전혀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 건의사항

- 법 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정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 목적’ 및 ‘활용 계획’ 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청구서식 개정 통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
- 법 11조3(부당한 청구 등의 처리) 신설
 - 사회통념상 과도한 청구로 판단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 조항 신설
- 법 30조(벌칙 또는 과태료) 신설
 - 비정상적으로 정보 청구하여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한 벌칙(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자치행정과)

성 명: 윤석운 ☎041)830-2446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신설></u>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정보 활용 계획</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부당한 청구 등의 처리) ① <u>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u>

<신 설>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결
처리를 할 때 해당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한 요구로 판단할 수 있다.

1.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
는 활용할 의사(제10조1항4호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한다)가 없이 정보공개 제도
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
려 하는 것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를 하는 것

3.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
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
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것

③ 제2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판
단 기준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종결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정보 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하여 정부공개 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받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른 형태로 가공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종결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⑨	귀농후계농 정책자금 선정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18~'19년 귀농 창업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혜자의 상환 기간 연장 건의

□ 현황

구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대상자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자 등	만65세 이하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등
지원규모		최대 5억원	최대 3.75억원
대출금리		연1.5%	연2.0% 또는 변동금리 선택
상환기간	'18년~'19년	3년 거치 7년 상환 (상환기간 연장 불가, 5년 유예 가능)	5년 거치 10년 상환 (상환기간 연장 불가)
	'20년~'22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상환기간 20년으로 연장 가능)	
	'23년~현재	5년 거치 20년 상환	

□ 문제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20년~'22년 수혜자는 당초 10년 상환에서 20년 상환까지 연장 혜택을 받는 반면, '18~'19년 수혜자는 상환 기간 연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 발생
- '19년까지 귀농 창업자금 상환조건이 유리했으나, '20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상환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 및 기존 대출자까지 상환 연장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선택 시기에 따른 정책 형평성 문제 발생

□ 건의사항

- 농업 정책자금 선정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 필요
 - '18~'19년 귀농 창업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혜자의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성 명: 김동혁 ☎041)830-2556

⑩	외국인자녀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자녀를 다문화가족의 범위로 포함하여 국내 정착 지원 및 평등한 학습 기회 제공

□ 현황

- 1995년 이후 지난 30년간 혼인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지속 증가('95년 3.4% → '24년 9.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

□ 문제점

- 외국인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미해당
→ 다문화자녀 지원제도(교육활동비, 학습비 등) 적용 불가
- 언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겪는 외국인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건의사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자녀를 다문화가족의 범위로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동일한 복지혜택 제공

작성기관

소 속 : 청양군(복지정책과)

성명: 연성흠 ☎041)940-2093

⑪	산지전용허가 권한 지방이양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산림청 (산지정책과)
추진기간	2025~	소요예산	-		

◆ 지방시대 지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지전용허가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의 지방이양 필요

- 지방이양 후 시·도지사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 위임 가능

□ 현황

○ 보전산지면적 100만㎡(전체산지 200만㎡) 이상 지역의 지정·결정 또는 산지전용은 산림청장 권한사항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산지관리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 15조

구 분		권 한 권 자		
		시장·군수	시·도지사	산림청장
보전 산지	지역 협의 전용 허가	3만㎡ 미만	3만~100만㎡미만	100만㎡ 이상
전체 산지	지역 협의 전용 허가	50만㎡ 미만	50만~200만㎡미만	200만㎡ 이상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지역 실정)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허가를 관리하면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이양 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음.

○ (행정 효율성) 허가 심사과정이 장기간으로 사업 지연, 민원 발생

- 지방이양시 절차가 단축되어 신속한 처리 및 민원 대응 가능

○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 중앙정부는 정책·기준마련, 기술 지원, 사후 관리 등 총괄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

□ 건의사항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 권한은 유지하되,
- 산지전용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산림청 소관 국유림 제외)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산림청장	
	현행	건의(안)	현행	건의(안)	현행	건의(안)
보전산지	3만㎡ 미만	-	3만~100만㎡ 미만	3만㎡ 이상	100만㎡ 이상	산림청 국유림
전체산지	50만㎡ 미만	-	50만~200만㎡ 미만	50만㎡ 이상	200만㎡ 이상	산림청 국유림

《산리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정건의(안)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생략)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생략)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작성기관

소 속 : 홍성군(도시과)

성명: 이한건 ☎ 041)630-1845

⑫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제도개선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현행 예비비 환원 제한 규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 예비비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
-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

□ 현 황

- (예비비 제도 제한사항) 예비비로 충당한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문제점

- (우리군 사례) 수해에 따른 수해폐기물 처리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대상이나, 국비 교부는 10월 이후로 예상되어 예비비 先 집행*, 後 정산 필요
- * 수해폐기물 적환장 화재 발생(사진참조), 환경·위생문제 등 2차 피해발생 대응
- ⇒ 국비 교부 후 재원변경으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만 예비비로 환원이 불가해 잔액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효율적 재정운영 제한
- ⇒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소요 ↑
- ※ 예산군 예비비 편성 현황 : 51억원(일반 49억원, 목적 2억원)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한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환원가능토록 제도개선

현행	개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중략)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중략)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사업예산의 잔액 환원 가능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402쪽)	

□ 수해쓰레기 적환장 화재 발생 [예산을 대회리 195-2]



작성기관

소 속 : 예산군(기획실)

성명: 마정재 ☎041)339-7122

⑬	격렬비열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외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태안군)	건의일자	2025. 9. 24.	협조부처 (부서명)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 제약 우려

□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개요

- 지정위치 : 인천 옹진군 목덕도 ~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 지정면적 : 1,662.27km²
- 지정목적 : 해양보호생물 서식지와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 ※ 현재 지자체 의견 수렴 중, '25년 연말 지정 계획

□ 문제점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구역과 중첩으로 사업 제약 불가피
 - 격렬비열도 인근 산자부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3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 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제약 발생
 -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1.4GW, 234.07km², 11조6천억원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사업 대상지와 중첩
 - 대한민국 영해기점으로 해양영토 주권 수호,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자원 확보를 위하여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 중
 - * (사업개요) '22~'30, 478억원, 관공선부두 135m, 호안 66m, 헬기착륙장 1개소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태안군 역점사업인 해상풍력사업과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외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태안군(해양산업과)

성명 : 송봉석 ☎041)670-2407

Ⅲ. 협의회 보고사항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워크숍 추진계획 ... 51
2. 민선8기 1-3차년도 우수 건의사항 담당자 국외연수 추진계획 ... 52
3. 호우피해지역 재해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55

III 협의회 보고사항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워크숍 추진계획

- 충청남도 시·군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의 초석을 다지고 자치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계획임.

I 워크숍 개요

- 일 시: 2025. 10. 15.(수) 14:00 ~ 16.(목) 10:00(1박2일)
- 장 소: 전라남도 신안군
- 참석대상: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
- 주요내용: 지역브랜드화 우수사례 탐방, 전문가 특강 등

II 워크숍 주요일정

일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1일차	집결	▶ 교육등록 및 안내	14:00부터
	특강 및 토론	▶ 자치분권 활성화 등 소통	1h
	브랜드화 우수사례 탐방	▶ 1004 뮤지엄파크, 둔산해변, 무한의 다리	2h
2일차	네트워킹	▶ 조식 및 티타임 후 해산	3h 이내

III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025. 9. 30.한: 워크숍 세부 추진계획 안내 → 시·군 담당 행정팀
- 2025. 10. 15. ~ 16.: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2025. 10. 24.한: 워크숍 결과보고 통보(협의회→각 시·군)
- 필수 수행인원을 제외한 참석인원 최소화

2

민선8기 1-3차년도 우수 건의사항 담당자 국외연수 추진계획

- 민선8기 1-3차년도 건의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건의 성과를 치하, 담당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우수건의 담당자 국외연수 추진계획임.

I

관련근거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4조(사업)
-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회의 심의 의결사항(2025. 3. 11. 계룡)
- 민선8기 1-3차년도 우수건의사항 선정 결과보고(충시협8-3-197)

II

연수개요

- (연수대상) 총 7명(우수건의사항 선정 3개 시군별 2명+협의회 1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1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행정7	전*혁
2	부여군	행정7	조*우
3	부여군	방송통신7	신*근
4	논산시	공업6	이*철
5	논산시	행정9	김*수
6	당진시	행정6	김*환
7	당진시	행정7	김*수

- (기 간) 2025. 10. 27.(월) ~ 10. 31.(금) / 4박 5일
- (국 가) 중국 심양
- (소요예산) 12,555,480원(환율 및 준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연수일정

○ (연수기간) 2025. 10. 27.(월) ~ 31.(금) 4박 5일

날짜	시간	주요일정
1일차 10. 27.(월)	08:50	▶ 인천 → 심양 (09:45)
	10:00	▶ [방문] 오녀산성[조망]/박물관
2일차 10. 28.(화)	10:00	▶ 백두산 북파: 노천온천지대/천지
	14:00	▶ [방문] 장백폭포/이도백하
3일차 10. 29.(수)	10:00	▶ 백두산 서파: 천지/37호경계비
	14:00	▶ [방문] 금강대협곡/고산화원
4일차 10. 30.(목)	10:00	▶ [방문] 광개토대왕릉/장수왕릉
	14:00	▶ [방문] 서탑거리 견학
5일차 10. 31.(금)	11:15	▶ 심양 → 인천 (14:10)

○ (항공편) 대한항공

- 인천 (08:50) → 심양 (09:45), KE831(1h 55m)
- 심양 (11:15) → 인천 (14:10), KE832(1h 55m)

○ (숙박) 잠정[통화(1박), 심양(2박), 이도백하(1박)]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IV 연수경비 및 산출내역

- 국제화 여비(202-04): 총 금12,555,480원(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항공료: 621,700 / 체제비(일비+숙박+식비): 1,161,940 / 보험료: 10,000
 - 총 1,793,640원 * 7명 = 12,555,480
- 참고사항
 - 「보령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국가 및 도시 등급 : 중국(다)
 - 환율 : 미국달러 1\$ = 1,417(2025. 9. 1. 기준 고시환율 하나은행)
 - 국외 여비 지급기준: 일비 \$30 / 숙박비 \$90 / 식비 \$44

※ 환율 및 준비금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V 향후계획

- 국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 2025. 9. 26.(금)까지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귀국 후 30일 이내(협의회 작성)

3

호우피해지역 재해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 ◎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회의에서 의결된 호우피해지역 10곳에 대해 협의회 재해재난지원금 지급 건에 대한 결과보고임.

□ 지급개요

- 지급대상: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지원금액: 총 30,000천원(3,000천원*10개 시·군)
- 지원방법: 충남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또는 시군 희망계좌 이체

□ 지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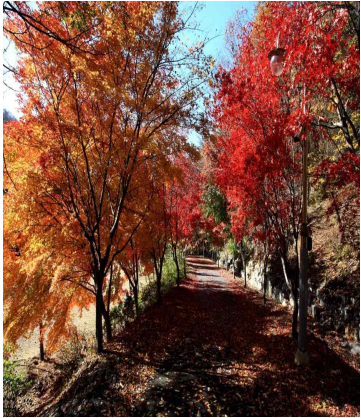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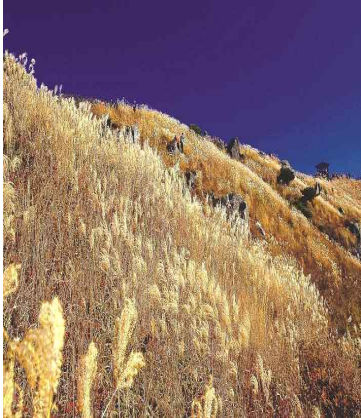
연번	구분	지급계좌	배분방식
1	천안	하나 / 667-910018-*****	천안시 행복키움사업[취약계층 지원]
2	공주	농협 / 408-01-*****	공주시청 추천 취약계층 지원
3	아산	농협 / 301-0317-****-91	아산시지역연계모금[취약계층 지원]
4	서산	농협 / 408-01-*****	서산시청 추천 취약계층 지원
5	당진	농협 / 301-0116-****-51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6	부여	농협 / 408-01-*****	부여군청 추천 취약계층 지원
7	서천	농협 / 301-0110-****-71	서천군희망디딤돌[취약계층 지원]
8	청양	농협 / 408-01-*****	청양군청 추천 취약계층 지원
9	홍성	농협 / 790311-06-*****	홍성군청 세외수입계좌
10	예산	농협 / 408-01-*****	예산군청 추천 취약계층 지원

IV. 홍보·협조사항

1. 낭만과 정취가 가득한 보령시 3대 가을 축제(보령)	59
2. 제71회 백제문화제 홍보(공주)	60
3. 2025년 제24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개최(아산)	62
4. 2025년 현충사 달빛야행 개최(아산)	64
5.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 개최(서산)	65
6. 제64회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제23회 칠갑문화제(청양)	67
7.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 페스티벌 개최(홍성)	69
8. 예산군 대표축제 및 신규 관광지 홍보(예산)	70
9. 2025 꽃과바다 태안국화축제 개최(태안)	72
10. 차기회의 개최 안내(협의회)	73

◆ 가을의 낭만과 정취가 물드는 보령! 황금빛 가을 보령시에서 펼쳐지는
설렘과 추억 가득 가을 3색 축제 개최 홍보

□ 축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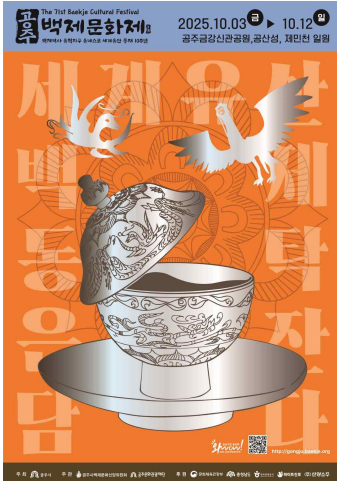
구 분	제22회 성주산 단풍축제	제7회 보령오서산 억새꽃 등반대회	제11회 청라 은행마을축제
일 시	10. 25.(토) 10:00~16:30 ※ 개막식: 10:30	11. 1.(토) 08:40~15:30 ※ 개막식: 09:00	11. 1.(토) ~ 11. 2.(일)
장 소	성주면 문화복지센터 (청소면 성연리 88-2)	오서산 주차장 (청소면 성연리 88-2)	신경섭 전통가옥 일원 (장현1리 장발길 62)
내 용	▶ 석탄산업 희생자 위령제 ▶ 노래자랑, 초청가수, 어린이 단풍그리기	▶ 오서산 등산대회 ▶ 노래자랑, 초청가수, 어린이 그림그리기	▶ 은행마을 버스킹 공연, 어린이 미술 공모전 ▶ 지역 농특산품 전시판매
현장사진			

□ 협조사항

○ 소속 직원 · 유관기관 · 단체 등에 보령시 3대 가을축제 홍보 협조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널리 알리는 제71회 백제문화제 개최 홍보 협조

□ 축제개요



- 축 제 명 : 제71회 백제문화제
- 축제기간 : 2025. 10. 3.(금) ~ 10. 12.(일) / 10일간
- 장 소 :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
- 주 제 : 세계유산 백제, 동탁은잔에 담다
- 주 최 : 공주시
- 주 관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재)공주문화관광재단
- 주요내용 : 공식행사, 퍼레이드, 공연, 제라불전 체험 등

□ 주요 프로그램

분 야	주요 프로그램
공식 행사	▶ 개막식 / 10. 3.(금) 19:00 ~ 21:50 / 금강신관공원 주무대 / 축하공연(김태우, 효린, 드론쇼(1,071대)) ▶ 폐막식 / 10. 12.(일) 19:00 ~ 21:00 / 금강신관공원 주무대 / 축하공연(코요테, 다이나믹듀오, 드론쇼(1,071대)) ▶ 블랙이글스 에어쇼 / 10. 11.(토) 17:00 ~ 18:00 / 금강신관공원 일원
대표 프로그램	▶ 웅진판타지아 / 10. 3.(금) ~ 10. 5.(일), 10. 7.(화) ~ 10. 9.(목), 10. 11.(토) 21:00 ~ 21:30 / 금강신관공원 주무대 ▶ 웅진성 퍼레이드 / 10. 4.(토) 15:00 ~ 17:00 / 왕도심 일원 - 중동교차로 → 연문광장 → 공주중학교 (8개 읍·면·동 참여) ▶ 무령왕의 길 / 10. 8.(수) 16:00 ~ 18:00 / 공산성안마을 ~ 금서루 ~ 연문광장 ~ 공산성방문자센터 ▶ 백제 인사이트(세계유산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관) / 10. 3.(금) ~ 10. 12.(일) / 금강신관공원 일원 ▶ 웅진백제등불향연, 웅진백제별빛정원 / 10. 3.(금) ~ 10. 12.(일) / 금강, 미르섬, 금강교, 공산성 일원 ▶ 2025 공산성 미디어아트 / 10. 2.(목) ~ 10. 18.(토) / 공산성 일원
기타	▶ 백제마을 고마촌 / 10. 3.(금) ~ 10. 12.(일) / 공산성 일원 ▶ 웅진체험마당 / 10. 3.(금) ~ 10. 12.(일) / 금강신관공원 일원 ▶ 웅진골맛집 및 푸드트럭 / 10. 3.(금) ~ 10. 12.(일) / 금강신관공원 일원 ▶ 공주시 특산물 홍보 및 판매 / 10. 3.(금) ~ 10. 12.(일) / 금강신관공원 일원



□ 협조사항

- 많은 도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별 홍보매체 (유튜브, SNS, 전광판 등)를 활용한 적극 홍보 요청

- ◆ 아산 외암마을의 전통문화자원을 연계·활용한 전통 관람, 체험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 행사개요

- (기 간) 2025. 10. 17.(금) ~ 10. 19.(일) 3일간 / 10:00~18:00
- ※ 10.6.(월)~10.9.(목) 추석연휴 사전행사(일부 체험프로그램)
- (장 소)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일원
- (주최/주관) 아산시 / (사)외암민속마을보존회
- (주요내용)

짚풀·돌 콘텐츠	민속콘텐츠	부대행사
· 전국 짚풀공예 경연대회(확대) · 아산시 짚풀짜기 경연대회(확대) · 짚풀공예 전시·시연·체험(확대) · 초가이엉잇기(확대) · 짚풀놀이터(확대) · 벼베기 체험(확대) · 600m 새끼꼬기 릴레이(신규) · 허수아비만들기 경연대회(신규) · 반려돌 만들기 체험(신규) · 한옥&돌담길 투어(신규)	· 전국 농악 페스티벌 · 전통문화 공연 · 농촌휴양마을 체험 - 천연염색 - 고무신테라리움 - 향주머니 만들기 등 · 외암마을 체험 - 전통상례·혼례, 불천위제 - 아궁이 가마솥밥 체험 - 떡메치기, 엿·강정만들기 - 장담그기, 다식만들기 - 다슬기잡기, 디딜방아 - 사주보기, 다도, 다듬이 - 화톳불, 연엽주 체험 - 솜사탕만들기 체험 등	· 건재고택 전시회(신규) · 가족 그림그리기 대회(신규) · 저잣거리 상설 체험 · 농산물 판매장터 · 먹거리장터(확대) · 개막식

※ 추석명절 사전 체험행사

- 일 시: 2025. 10. 6.(월) ~ 10. 9.(목)
- 주요행사: 가족 허수아비 만들기대회, 외암마을 가족그림그리기 대회 등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홍보매체(유튜브, SNS, 전광판 등)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

붙임 2025년 제24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홍보 포스터



4

2025년 현충사 달빛야행 개최

【 아산시 】

- ◆ 현충사 경내 일원에서 공연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아산의 이순신을 조명 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 행사개요

- (행사기간) 2025. 10. 18.(토) ~ 10. 19.(일) 17:00~21:30
 ※ (연장개방) 2025. 10. 21.(화) ~ 10. 23.(목) 17:00~21:30
 ○ (장 소)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 일원
 ○ (주최/주관) 아산시, 현충사관리소 / (재)아산문화재단
 ○ (주요내용)

일정	분야	프로그램	시간	장소
10. 18.(토) ~ 10. 19.(일)	공연	달빛 음악회 (재즈, 클래식 공연)	18:00 ~ 20:00	활터
		이야기극 (이순신 인형극)	17:00 ~ 19:00	구현충사
		달빛 음감회 (영상과 함께하는 음악감상)	19:00 ~ 21:00	잔디밭
		달빛 콘서트 (국악 공연)	18:30 ~ 21:30	충무문
	체험	활쏘기, 다도, 페이스페인팅, 그림톡 만들기 등	17:00 ~ 21:00	잔디밭, 충무문
10. 21.(화) ~ 10. 23.(목)	야간경관 및 전시	야간조명, 포토존, 독서존 및 설치미술품 전시	17:00 ~ 21:30	현충사 일원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홍보매체(유튜브, SNS, 전광판 등)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

5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 개최

【 서산시 】

- ◆ 600여 년 해미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하고자 함.

□ 축제개요

- 기 간: 2025. 9. 26.(금) ~ 9. 28.(일), 3일간 ※ 개막식 9.26.(금) 19:00
- 장 소: 서산해미읍성 일원
- 슬 로 건

고성방가(古城放佳)시즌3 - “과거 · 현재 · 미래의 지혜를 만나다

- 사 업 비: 1,700백만원(도비 200, 시비 1,500)
- 주최·주관: 서산시 / 서산문화재단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공군제20전투비행단 등

□ 주요 프로그램

개막프로그램	4개[세계민속공연, 식전 공연, 개막 주제공연, 초청가수공연]
공연프로그램	8개[해미 어린이 공연, 세계민속공연, 해미 더 클래식, 해미해피콘서트, 서산 헤리티지, 뮤지컬 갈라쇼, 블랙이글스, 고성방가 EDM파티]
상생프로그램	2개[해미해피데이, 이고지고 이어달리기]
체험프로그램	7개[전통혼례 체험, 태종대왕행렬, 전통문화체험, 해미 인생네컷, 서산 헤리티지, 청허정 힐링요가 및 수면콘서트, 3D펜으로 그리는 해미읍성DIY]
상설프로그램	4개[해미 피크닉, 어린이 지혜 놀이터, 어린이 당근마켓, 해미해피테이블]
전시프로그램	3개[미디어아트, 해미읍성 홍보·주제관, 웅기박물관 물품 전시]

□ 협조사항

- 충남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홍보 협조
 - 시·군 홈페이지, SNS 등에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 ◆ 제23회 칠갑문화제를 통해 풍물시연회와 민속제전을 개최하여 전통놀이 문화의 가치 확산과 계승 도모

□ 행사개요

- 일 시 : 2025. 10. 1.(수) 09:00 ~ 16:00
- 장 소 : 백세건강공원
- 참석인원 : 3,000여 명(관내 · 외 초청내빈, 출향인, 군민 등)
- 주요내용 : 군민의 날 기념식, 칠갑문화제 행사(읍·면 풍물시연회 및 민속제전)
- 주최/주관 : 청양군

구분	시 간			행 사 명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1부	09:00	09:50	'30	입 장 식	
	10:00	11:00	'60	제64회 군민의 날 행사	본무대
2부	11:00	11:30	'30	청양한국무용예술단 공연, 사물판굿 공연	본무대
	11:30	13:50	'140	민속제전(4개종목) <한궁, 제기, 투호, 오재미>	백세공원
	13:50	15:50	'120	칠갑가요제 및 축하공연(강민주, 박성현, 서가비)	본무대
	15:50	16:00	'10	폐회 및 마무리	

□ 주요내용

- 입장식(읍·면 전통문화 퍼포먼스, 풍물단 공연)
- 군민의 날 기념식(군민대상 시상 등)
- 민속놀이 4종목, 칠갑가요제, 축하공연 등

□ 홍보사항

- 행사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풍물시연과 민속제전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함께 전통문화 향유

제64회 청양군민의 날

칠갑문화제 제23회

2025. 10. 01.(수) 09시~16시

백세건강공원

입장식(음·면 전통문화 퍼포먼스, 풍물단 공연)

군민의 날 기념식

민속놀이 4종목

칠갑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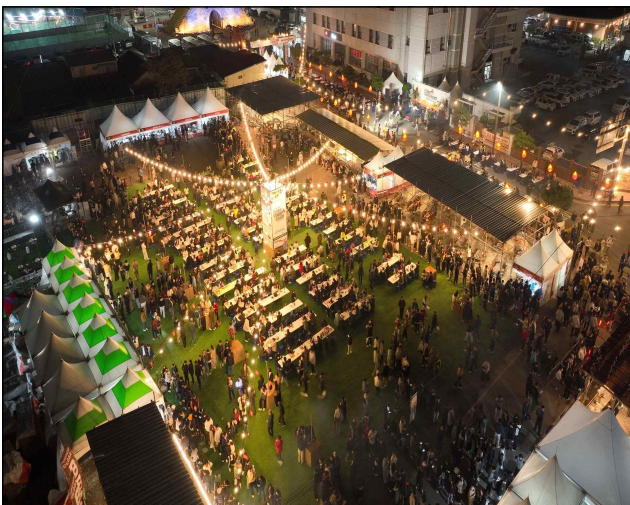
축하공연



- ◆ 55만명이 방문한 제2회 축제에 이어,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 홍성에서 개최하는 오감만족, 지역상생 대표축제인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개최

□ 개요

- (기 간) 2025. 10. 30. ~ 11. 2., 4일간 ※ 개막식 : 10.30.(목) 17:00
- (장 소) 홍주읍성 일원(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내 용) 테마 바비큐존, 홍성 한우·한돈존, 가족 체험, 국화사랑축제, 평생학습한마당 등



□ 홍보사항

- 많은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를 맞아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신규 관광자원 개장 및 하반기 대표축제 개최에 따른 홍보

□ 축제개요

- (축 제 명) 제9회 예산장터삼국축제 × 제22회 예산황토사과축제 연계
- (기 간) 2025. 10. 23.(목) ~ 10. 26.(일) 【4일간】
- (장 소) 예산시장 일원
- (주최주관) 예산군·예산군개발위원회/예산농금농협

□ 주요내용

- (공연·경연) 개막식, 초청가수, 춤꾼페스티벌, 삼국의 맛을 찾아라!
- (체험·전시) 삼국팝업존, 예산사과품평회, 국화전시, 국화분재
- (먹 거 리) 뉴트로 낭만포차, 예산시장, 국밥거리 연계
- (농 · 특산물) 로컬푸드 「어서오샵」 연계, 예산사과 할인판매



삼국축제 포스터



사과축제 포스터



국화전시

□ 관광지 개요

관광지명	내 용	사 진	비 고
덕 산 황 톳 길 죽 욕 장	650m 황톳길, 덕산온천 족욕장		황톳길 : 25.7.1.~ 족욕장 : 25.9.1.~
예 당 호 어 드 벤 처	총 71개 코스 (슬라이드, 콜러코스터쥬 등)		개장일 : 25.8.1.~
예 당 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 숙박시설, 치유농장,팜센터		시범운영 : 9.16~ 개장식 : 10.1.

□ 협조사항

- 새롭게 개장한 예산군 관광시설 및 대표축제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

- ◆ 역사와 문화가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농특산물 홍보와 체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지역 관광자원 볼거리 홍보

□ 행사개요

- 기 간 : 2025. 10. 31. ~ 11. 9. / 10일간
- 장 소 : 태안군 원북면 옥과로 199-7(이종일선생 생가지)
- 주요내용 : 5개 분야 40개 단위행사 운영
 - 개막식, 작품국화, 화훼 전시 및 연출, 공연, 판매, 체험행사



국화축제장 전시



개막식 행사



야간개장 전경



무료 꽃꽂이 체험

□ 협조사항

-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심

10 차기 회의 개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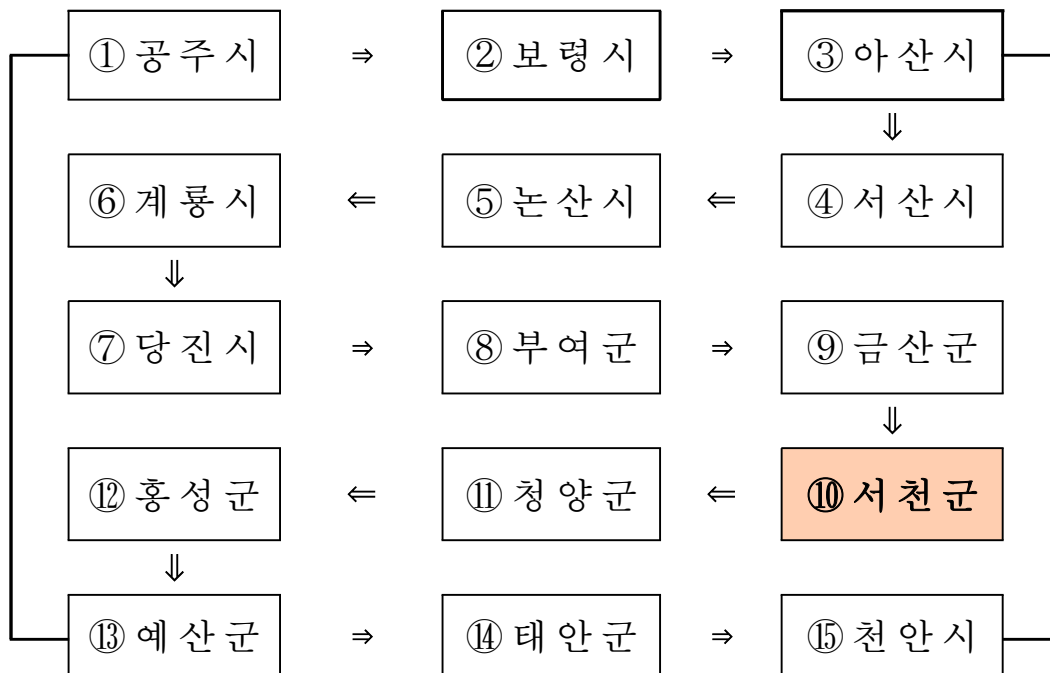
【 사무국 】

□ 개요

- 개최시기 : 2025. 11월 중
- 개최장소 : 서천군

※ 협의회 회의지역 순회결정: 민선8기2차년도제2차 정기회의(부여군, 2023.11.7.)

<시·군 직제순서에 의거 개최>



* 민선8기 2회('22.'23년) 회의를 개최한 천안시는 순번 마지막으로 배치

V.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주요내용 ... 77
2.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충남공무원노조 간담회 주요내용 ... 81
3.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87

참고 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주요내용

□ 주민소환법 개정 대응

◆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정부·국회가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속 대응 필요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정부안('20년)	의원발의안('24~'25년)
청구요건	대상별 구분 (기초단체장 : 청구권자 15% 이상)	인구규모별 차등	직전 지방선거 평균투표율의 15%이상
개표요건	청구권자 1/3 이상	청구권자 1/4 이상	(민형배 안 : 개표요건 삭제)
청구제한기간	취임 후 1년 임기만료 전 1년	해당없음	임기만료 전 6개월(단축) 임기만료 전 조항 삭제

※ 의원발의안에 따르면, 제8회 선거(2022년, 투표율 50.9%)기준, 7.6%만으로 소환청구 가능

※ 정춘생의원 발의안은 비례대표까지 소환대상에 포함

■ 관련기관·단체의 입장

- (자치단체 및 지방4대협의회)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출직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 등 관점을 고려, **개정에 신중할 필요**
 - 주민소환의 남발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 과도한 행정력 및 재정력 소모, 이에 따른 대주민서비스 약화 우려
- (행안부) 지난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주민소환제 개선’ 이 포함되어 주민소환법 개정이 불가피하나, 부작용 최소화는 필요하다는 입장

■ 향후 대응계획

- 정부는 금년 하반기 개정안 마련 및 내년도 개정 완료를 목표로 계획
 - 청구요건과 개표·확정요건(예: 1/3(현행)과 1/4(개정안)의 중간선인 30%) 등 대안 마련 및 입법 제안 :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협의회 대안 수립 예정
- 개정안 발의 시, 시군구 의견수렴을 통한 대한민국협의회 의견 제출,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조 등 대응 필요

※ 주민소환법 개정안(의원발의안)에 대해 시군구 의견을 수합한 **협의회 반대의견 제출**(25.6.12.)

□ 자치단체 보훈수당 정책동향

◆ 자치단체 보훈수당 관련 대통령(25.6.12) 및 보훈부장관(25.7.25) 보훈수당 형평성 대책 마련 국가보훈부 간담회(25.8.6) 및 정책동향

■ 개요

- 일 시 : 2025. 8. 6.(수) / 14:30~16:00
- 장 소 : 국가보훈부 1층 소회의실(세종시)
- 내 용 : 지자체 보훈수당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주요 회의내용

- 국가보훈부
 - 자치단체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권고, 그러나 권고에 불과하여 실행력에 한계로 자치단체 자체사업에 국비 지원 애로
 - 최근 지자체 보훈수당 형평성 제고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 중
- 시군구협의회
 - 보훈사업은 국가사무로 보완적 의미에서 자치단체가 시작하였으나, 급여액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여건에 따른 급여표준화가 어려움
 - ※ 자치단체 참전수당 : ○○구 3만원 ~ ○○시 50만원 지급,
광역+기초 합산액 : 최소 12만원 ~ 최대 60만원 지급
 - 자치단체 사업이긴 하나 보훈의 사무특성상 중앙정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자치단체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 향후 대응계획

-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 및 공동대응 지속
- 25. 9. 국회토론회 개최시 기초자치단체 입장 전달 예정
- 추후 현황 파악 및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하여 정책대안 마련

□ 「돌봄통합지원법」 국회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년 3월)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 결과

■ 행사개요

- 일 시 : 2025. 08. 26.(화).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 제 :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 주요내용

- 돌봄통합 관련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
- 초기 안정적인 사업의 정착을 위한 사업비 국비 지원
- 통합돌봄 거버넌스에 기초단체의 참여 보장 등 분권적 운영체계 정립
-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정 추계 및 정부간 재정분담 방안 필요
- 통합돌봄 서비스와 재원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 로드맵 제시

■ 기대효과

-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개선과제에 대한 공론화 기여
※ 국회토론회 유튜브 영상 조회수 2천회 이상 달성
- 내년 관련 국비예산 수립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긍정적 입장 유도

□ 중앙 정책건의 중점과제 추진현황

◆ 민선 8기 중앙정책 건의사항 중 중복된 제도개선 과제를 선별·발굴한 중점과제 추진현황 보고임.

■ 추진현황

① BF인증제도의 개선 ※ 민선8기 중복건의 12건

- (문 제 점) 인증기관 부족, 인증기간 지연, 평가기준 객관성 부족
-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담당자 방문 : 2025. 4. 11.(금)
 - 인증기간 지연사유 접수(지자체) 및 통보(보건복지부) : 2025. 4. 16.~5. 8.
 - BF인증제도 개선 관련 연석 간담회* 개최 : 2025. 7. 8.(화) / 오송컨퍼런스
 - *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 40여 명 참석
- (추진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인증기간 지연 해소 및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BF인증기준해설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 배포 예정

②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완화 ※ 민선8기 중복건의 7건

- (문 제 점)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으로 농어촌 지역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등 이용 불가
- (추진현황)
 - 「지역상품권법」 개정 관련 신정훈 국회의원실 방문 : 2025. 4. 17.(목)
 - 행정안전부 담당자 면담: 2025. 5. 20.(화)
- (추진결과) 행정안전부에서 面지역 중 접근성, 소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판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록 제한 완화(25. 8. 21)
 - * 779개소의 하나로마트, 252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 향후계획

- BF인증 관련 인증기준해설서 배포^(25.하반기) 이후 개선사항 모니터링 지속
 - ⇒ 개선 미흡 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연계하여 간담회 추진
- 등록제한 완화 이후 읍·면 지역 여론 및 국회 법률개정 동향 파악

1. 2025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후속 대책 마련

- 정부합동감사, 공유재산(구내식당) 관리 및 운영 부적절 지적
 - 천안시 등 12개 시·군은 공유재산법에 의거하여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 자료요구 및 사실 확인
- 충남공무원노조 요청사항
 - 구내식당 운영 현황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자치사무에 중앙정부가 감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월권적 감사행위 근절 건의 필요

2. 도-시군 간 정당한 인사교류 시행

- 지방자치법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정당한 행사 필요

<지방자치법 123조>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이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충남공무원노조 요청사항
 - 중앙·광역·기초가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부단체장 인사 특성상 시군과 1:1 인사교류로 시군과의 인사적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3. 합리적 노사관계를 통한 상생발전

- 노조 가입범위 확대(공무원노조법 제6조)
 - 6급 이하 공무원 →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2)
- 충남공무원노조 요청사항: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노조활동 보장

4.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and 행정서비스 향상

- 저연차 공무원 의원퇴직 비율 상승, 원인은 악성민원 및 직장갑질 등이 대다수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보호 대책과 피해자 지원책 필요
- 충남공무원노조 요청사항
 - 본청 민원실 및 읍면동 별 안전요원 배치, 저연차 공무원 고충상담 강화
 - 악성 민원 및 직장갑질 발생 시 내실있는 지원책 마련

1. 2025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후속 대책 마련

추진배경

- 정부합동감사, 공유재산(구내식당) 관리 및 운영 부적절 지적
 - 천안시 등 12개 시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 자료요구 및 사실 확인

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

- 천안시 등 11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상록회, 자유회 등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나 관리위탁 계약을 하지 않았고, 상록회 등에서 발생한 수입과 재료비 등 지출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 상록회 등의 단체가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들로만 구성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구내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와 방법이 공유재산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허가, 행정재산 관리 위탁, 직접 운영 등 실정에 맞는 구내식당 운영방안 마련 시행
- 직접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4조 등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

총공협 의견 및 요청사항

- 구내식당 운영 현황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로서 중앙정부가 감사할 권한이 없음.
- 현행 구내식당 운영으로 해당 지자체에 예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비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당 처분은 과도함
- 이에 노조에서는 변호사 의견을 종합하여 소송 검토 중
- 집행부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하되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 대안 마련(시군별 노사협의)
- 또한 동일 사안처럼 기초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월권적 감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필요

(참고) 합동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시군별 조치계획

- ① 사용허가·사용료납부(6) : 천안, 보령, 논산, 계룡, 서천, 태안
- ② 직접운영·예산반영(5) :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예산

2. 도와 시군 간 정당한 인사교류 시행의 건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명권의 정당한 행사 필요
 - 지방자치법 제123조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이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로 도청 승진 가속화 및 시군 인사적체 심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⑦항 개정(2024.12.31.)으로 인구 5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 지방서기관(4급) → 지방부이사관(3급)
- 부단체장 인사는 중앙↔도·광역시↔시·군·구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시 시군과 1:1 인사교류로 시군과의 인사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함

충공협 의견 및 요청사항

- 도-시군 간 인사교류, 시군 간 균형발전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 그러나, 도 출신 일부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등의 경우 지역 실정 미파악 및 업무능력 한계 등으로 민원 야기 및 조합원의 사기저하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 마련 필요
- 또한 잦은 인사교류를 지양하여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추진
- 도 자원 간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교류 지양하고 도와 시군 간 정당한 1:1 인사교류 추진
- ※ 도 : 부단체장(2급/3급) ↔ 시군 : 4급/5급

3. 합리적 노사관계와 상생발전의 건

추진배경

- 전 정부 시기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일부 개정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추진(21.7.6 / 23.12.11)
- 노조 가입 범위 확대(공무원노조법 제6조)
 - 6급 이하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21.7.6 시행)
-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단체장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23.12.11 시행)

총공협 의견 및 요청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노조 활동 보장
-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노사협의 및 교섭, 조합원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에 충실하도록 보장
- 이를 통해 조합원의 요구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와 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4.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and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배경

-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퇴직 비율 상승
- 악성 민원과 직장 갑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
- 이미 지자체별로 악성 민원·직장 갑질 보호 조례 등 제정되었으나
-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보호 대책과 피해자 지원책 미비 판단

충공협 의견 및 요청사항

- 본청 민원실 및 읍면동별 안전요원(청원경찰 등) 배치
 - 관련 인력 및 예산 수립 방안 마련
 - 중앙정부에 인력 및 예산 추가배정 노사 양측 적극 건의
-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고충 상담 강화
 - 상담 시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 노조사무실에 상담센터 운영 및 노조에 상담업무 지정으로 저연차 직원의 상담 접근성 유연하게 대처 필
- 악성 민원 및 직장 갑질 발생 시 내실 있는 지원 대책 마련
 -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제반 치료비용 지원
 - 치료에 충분한 휴식권 보장
 -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법률 대응 강화
- 악성 민원 및 직장 갑질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제정) 1998. 8. 22.
 (일부개정) 2019. 5. 27.
 (일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0. 7. 13.
 (일부개정) 2021. 9. 7.
 (일부개정) 2023. 4. 26.
 (일부개정) 2025.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회의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회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회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회를 대표하고 협회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회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회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① 협의회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 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는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상징물) ①협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상징물은 ‘통합브랜드’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ChungCheongNamDo Association of Mayor